

지역발전과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「빛가람 미래농업 인재육성 과정」 협약서

한국농어촌공사,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, 한국농촌경제연구원,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, 전라남도농업기술원, 나주시(이상 주관기관), 전남대학교, 조선대학교, 동신대학교, 순천대학교, 목포대학교(이상 참여기관)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 1 조(목 적) 본 협약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상호간 공동 협력을 통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력(직무능력)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, 청년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과 예비 취업생의 기초 직무 역량을 함양하는데 목적이 있다.

제 2 조(신의성실) 본 협약 당사자는 신의성실과 상호존중의 원칙에 따라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며,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.

제 3 조(협력내용)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직무능력 중심 교육과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협력한다.

【주요 협력 사항】

- ① 빛가람 미래농업 인재육성 과정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
- ② 빛가람 미래농업 인재육성 과정 운영 관련 지원 및 정보 공유
- ③ 학생들의 방학 중 직무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참여와 노력
- ④ 청년층 일자리 발굴·지원을 위한 정보공유 등 상호 협력
- ⑤ 대학의 진로지도 및 취업·창업 지원역량 확충을 위한 기관 간 협력

제 4 조(운영계획) 본 협약은 이 협약서, 주관기관이 수립한 운영계획에 따른다.

제5조(주관기관의 역할) 주관기관은 향후 본 과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효과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참여기관과 협력을 도모한다.

제6조(참여기관의 역할) 참여기관은 주관기관의 운영계획 등을 준수한다. 특히 참여기관은 교육생 공정선발 및 능력 중심 교육에 적극 협조한다.

제7조(기밀유지)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이 협약과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상호 신뢰 하에 제공하며, 제공 당사자가 모든 자료 및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. 효력이 종료한 이후에도 동일하다.

제8조(고지 의무) 협약 당사자는 이 협약 체결 후 중요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상대방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9조(변경 및 해지) 이 협약서는 협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. 또한 이 협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일방 당사자가 협약 의무를 위반한 경우 서면 통보로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10조(효력 및 유효기간) 이 협약서는 직인날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유효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고, 효력 만료일 이전에 본 협약의 종료를 위한 서면통보가 없을 경우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 단, 이전 협약은 본 협약으로 대체한다.

제11조(추가적인 참여) 참여기관으로 신규 참여를 요청하는 기관이 발생할 경우 주관기관은 기존 참여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
제12조(직인날인 및 보관)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본 협약서를 작성하면 직인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0년 11월 26일



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
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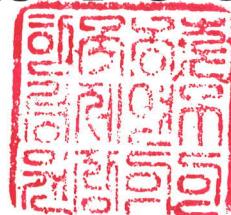
사장 김 인 식



사장 이 병 호



원장 김 흥 상



IPET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

원장 오 병 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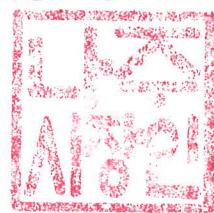
전라 남도 농업기술원

원장 박 흥 재



나주시

시장 강 인 규



전남대학교

총장 정 병 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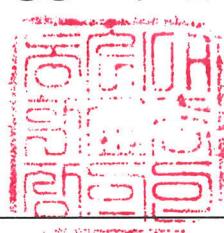
조선대학교

총장 민 영 돈



동신대학교

총장 최 일



순천대학교

총장 고 영 진



국립목포대학교

총장 박 민 서

